

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)	
위험물용기	종류		
	재질		
제조번호		수량	
형식			
표시			
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			
제조사	명칭		
	주소		

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제20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.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유의사항

○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

-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
- 중형산적용기(금속중형용기,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)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
- 플라스틱드럼, 플라스틱제리칸,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(액체용만 해당한다)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(액체용만 해당한다)가 제조 후 5년(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)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

처리절차

